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21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이재정·조계원·강유정

김한규 • 윤준병 • 김준형

박홍배 · 서미화 · 김태년

김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체육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특히 이스 포츠와 바둑과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예컨대,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포함된바 있음. 이들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서 공인받고 있으며, 규칙성과 경쟁성, 관중성, 산업적 확장성 등의 요소를 갖춘 주요 스포츠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신체·의지·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활철학'을 올림픽 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도

체스, 바둑, 브리지 등 비신체 중심 종목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육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 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다양한 체 육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체육의 정의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체육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체육의 산업적·문화적 가치 증진과 함께 국민체육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이란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의 건전한 활용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u>1. "체육"이란 신체 및 두뇌 활</u>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정신을 기르고 여가의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	활용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		
<u>다.</u>	<u>다.</u>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